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성호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감액 배수를 삭제하여 구조금 하한액을 인상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을 확대하고,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구조금 감액배수 삭제 및 기준 개월 수 조정(현행 별표4 및 별표5 삭제, 안 제22조)

구조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시키는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기준 개월 수를 조정함으로써 구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구조금을 확대함

나. 유족 순위 및 유족구조금액 관련 연령 기준 개선(안 제22조)

생계의존 유족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생계의존 유족보다 선순위 유족이 되게 하되 연령 기준에 따라 구조금액에 차등을 두고, 유족 중 자녀, 손자녀의 연령기준을 2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사회초년생 유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

다. 구조금액 제한의 순서 명시(안 제25조)

현행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구조금액 제한 사유인 감액(법 제19조), 공제

(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), 상한(현행 제22조 및 제23조 각 단서, 제24조 제1항 단서)이 경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,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인 ‘공제-감액-상한’ 순으로 제한사유를 적용하여 최대한 많은 구조금을 지급

라.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 완화(안 제41조제1항제2호)

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요건을 완화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등록요건 중 일정한 자격·경력을 갖춰야 하는 임직원의 수를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”을 “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유족구조금의 금액)”을 “(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수”란을 “수”(이하 “유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”라 한다)란”으로, “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”을 “개월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유족:”을 “유족 중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: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: 36개월(다만 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2개월)

가. 60세 이상인 부모

나. 25세 미만인 손자·손녀

다. 60세 이상인 조부모

라.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유족: 다

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자녀 또는 부모: 28개월

나. 손자·손녀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: 24개월

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장애인에 대한 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) 제22조에도 불구하고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로 한다.

1.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: 48개월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: 36개월(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2개월)
3.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자녀 또는 부모: 28개월

나. 손자·손녀,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: 24개월

제22조의3(유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의 조정) 법 제18조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유족의 유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로 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장해구조금의 금액)”을 “(장해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”을 “개월”로 하며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중상해구조금의 금액)”을 “(중상해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”을 “개월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,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구조금액 제한의 기준) ① 법 제19조와 법 제20조,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법 제20조,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수령한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및 손해배상을 공제한 다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.

②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구조금액(법 제19조,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 또는 감액한 구조금액)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구조금액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결정통지서를”을 “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”로 한다.

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10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조금액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7조(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)	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	제17조(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)		
	<u>해당</u>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	-----		
	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	<u>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</u> -		
	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(전	-----		
	자문서를 포함한다)을 구조금	-----		
	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	-----		
	출하여야 한다.	-----		
	1. ~ 4. (생략)	-----		
제22조(유족구조금의 금액) 법 제	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	제22조(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		
	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	<u>수)</u> -----		
	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	-----		
	금(이하 “월급액등”이라 한다)	-----		
	에 곱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한	-----		
	개월 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	--- <u>수</u> ”(이하 “ <u>유족구조금 기준</u>		
	에 따른 <u>개월 수에 별표 4의 배</u>	<u>개월 수</u> ”라 한다)란 -----		
	<u>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. 다</u>	----- <u>개월</u> -----.		
	<u>만,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</u>	<u><단서 삭제></u>		
	<u>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u>			
	1.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:	1. ----- 유족		
	<u>48개월</u>	<u>중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</u>		
		<u>자녀:</u> -----		
		--		
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:

38개월

3.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:

28개월

<신 설>
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

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사람: 36개월(다만

같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

명 이상인 경우에는 42개월)

가. 60세 이상인 부모

나. 25세 미만인 손자·손녀

다. 60세 이상인 조부모

라.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

상인 형제자매
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

않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

유족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

른다.

가. 자녀 또는 부모: 28개월

나. 손자·손녀, 조부모 또는

형제자매 : 24개월

제22조의2(장애인에 대한 유족구

조금의 기준 개월 수) 제22조에

도 불구하고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

된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장애

인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

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

조금 기준 개월 수로 한다.

1.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:

<신 설>

제23조(장해구조금의 금액) 법 제 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여등에 곱하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. 다만, 장해구조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

48개월

2.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:

36개월(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2개월)

3.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:

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자녀 또는 부모: 28개월

나. 손자·손녀, 조부모 또는

형제자매: 24개월

제22조의3(유족구조금 기준 개월

수의 조정) 법 제18조에 따른

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

경우로서 각 유족의 유족구조금

기준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는

그 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유

족구조금 기준 개월 수로 한다.

제23조(장해구조금의 기준 개월

수) -----

----- 개월 -

----- . <단서 삭제>

제25조 (생략)

제39조(결정 및 통지) ①·② (생략)

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제41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)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법인의 임원·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
액한다.

②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한 구조금액(법 제19조,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제 또는 감액한 구조금액)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구조금액으로 한다.

제25조의2 (현행 제25조와 같음)

제39조(결정 및 통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-
-----.

제41조(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7명 -

가. ~ 다. (생 략) 3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인권구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3642